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65
----------	-------

발의연월일 : 2019. 11. 7.

발의자 : 김태흠 · 경대수 · 손혜원  
황주홍 · 이양수 · 김성찬  
박주현 · 윤준호 · 강석진  
오영훈 · 정운천 · 김현권  
강석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호 등).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를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중 “목적사업에 착수하지”를 “목적사업을 시작하지”로, “목적사업에 착수한”을 “목적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허가의 취소) -----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u>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u>	1. ----- <u>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한 경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3. -----

